

돌아 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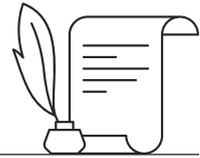
: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<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>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16)





제1차 개정('90. 1. 13.)

개정사유

타 법령에서 안전·보건에 관련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협의토록 함

개정내용

제2항 : 신설

② 행정기관(노동부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항 : 신설

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,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·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.

제2항 → 제4항 : 권고 또는 요청 → 권고하거나 협조

제9차 개정('99. 2. 8.)

개정사유

안전문화의 추진, 산업재해예방 홍보, 안전·보건 점검 등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한되어 있어

- 협조기관의 범위에 각종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고

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포함시켜 산업재해예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개정내용

제1항 : 관계행정기관의 장 →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

제24차 개정('09. 2. 6.)

개정사유

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개정내용

제1항 :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→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/ 관계행정기관 → 관계 행정기관 / 정부투자기관 →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제2항 : 행정기관(노동부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→ 행정기관(노동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/ 하고자 할 때에는 → 하려면

제3항 :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→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/ 요구한 때에는 → 요구하면 /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·

조정사항을 →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 · 조정 사항을

제4항 : 산업재해예방 → 산업재해 예방 /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→ 사업주단체, 그 밖의 관계인에게

제28차 개정('10. 6. 4.)

개정사유

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에 따라 부처명칭 등 관계 조문의 용어 정비

개정내용

제1항 : 노동부장관 → 고용노동부장관

제2항 : (노동부는 → (고용노동부는 / 노동부장관 → 고용노동부장관

제3항 : 노동부장관 → 고용노동부장관

제4항 : 노동부장관 → 고용노동부장관

제9조의2(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)

제9조의2(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)
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차 개정('02. 12. 30.)시 신설

신설사유

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제도 외에 사업주의 명예 ·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





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산재다발 또는 은폐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

신설내용

제9조의2(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)

-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차 개정('09. 2. 6.)

개정사유

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개정내용

제1항 :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→ 인정할 때

에는 대통령령으로

제2항 :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→ 제1항에 따른

제28차 개정('10. 6. 4.)

개정사유

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에 따라 부처명칭 등 관계 조문의 용어 정비

개정내용

제1항 : 노동부장관 → 고용노동부장관

제2항 : 노동부령 → 고용노동부령

제10조(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)

제10조(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)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·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정('81. 12. 31.)

제10조(보고·출석의 의무)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. ☹